

## E-Channels 부가서비스 별첨(아시아 태평양)

### E-Channels 부가서비스 별첨

본 부가서비스 별첨은 다음의 당사자간에 체결된 E-Channels 고객 계약(이하 “계약”)에 대한 별첨으로서 동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고객명:  
주거래은행명:  
체결일:

고객은 본 부가서비스 별첨을 통해 신청한 각 국가별 서비스에 적용되는 E-Channels 부가조건을 수령하였고, 이를 이해하고 수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고객을 대리하여 서명함

성명(대문자로 기입 요망)	성명(대문자로 기입 요망)
직위	직위
수권대리인의 서명	수권대리인의 서명
날짜	날짜

원하는 서비스(들)와 서비스(들)를 받고자 하는 국가(들)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또한 귀하가 신청한 각 국가의 각 서비스에 대하여 부속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상세한 계좌 정보를 위해 계좌 및 서비스 명세, 계약상의 관련 항목 또는 기타 은행이 지정하는 양식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관할지역	서비스					
	COS	LBX	RMS	NNC	기타	기타
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용어해설: COS (수표 아웃소싱 서비스) LBX(락박스 서비스), RMS(매출채권관리시스템), NNC(전국 전산망 추심)

(붙임 2)

## E-Channels 추가계약서 - 매출채권관리시스템(RMS)

### 1.개 요

- 1.1.본 매출채권관리시스템 (Receivables Management System, 이하 “RMS”) 추가계약(이하 “본 RMS추가계약”)은 이용자가 HSBC은행의 RMS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 적용되며, 이용자와 주거래 은행(이하 “은행”) 사이에 체결한 E-Channels 이용자계약 (이하 “기본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1.2.기본계약 제13.4조에 의거하여, 이용자가 이용자계열회사(Customer Associate)를 대리하여 RMS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 RMS 추가계약은 은행과 이용자계열회사 사이에도 적용되며, 본 RMS추가계약서에 명시된 이용자에 대한 모든 사항들은 이용자계열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 1.3.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기본계약에서 정의한 용어는 본 RMS 추가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1.4.본 RMS 추가계약은 기본계약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이며, 본 RMS 추가계약과 기본계약이 상이한 경우, RMS서비스와 관련되어서는 본 RMS 추가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 1.5.일부 특정 국가의 경우, RMS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 규제, 사업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요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개별 국가별 특수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본 RMS 추가계약서 별첨에 명시됩니다.
- 1.6.본 RMS 추가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표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매출채권 대사 서비스**      은행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의 개별 매출채권 내역과 입금거래내역을 상호 대조하여, 대사 및 해당 보고서를 작성해주고, 이용자에게 대사 처리된 매출채권 파일을 제공하는 RMS의 한 서비스입니다.

**배분원칙**                      지급인이 지급과 관련된 인보이스를 명시하지 않거나, 지급금액이 모든 관련된 인보이스를 정산하기 불충분하거나, 또는, 명시되거나 첨부된 인보이스와 맞지가 않을 경우, 지급금액을 지급인의 인보이스와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은행에 의해 지정되거나 수시로 이용자가 선택하는 하나이상의 규칙을 말한다.

**매출채권 파일**                매출채권 거래내역 파일을 말합니다.

**매출채권 거래내역**            은행이 RMS 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자가 인보이스의 모든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기록을 의미합니다. 모든 매출채권 거래내역은 E-Channels 또는 은행과 이용자가 수시로 합의한 이와 유사한 다른 수단, 매개물 또는 경로를 통해 매출채권 파일 형태로 은행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은행(“우리”, “우리를”, “우리의” 포함)**        해당 관할 지역에서 RMS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각 RMS 서비스의 별첨 첫 번째 장에 명시된 HSBC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비록, 기본계약에서는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MS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에는, 기본계약서상 은행도 본 RMS추가계약에서 정의된 은행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영업일**                         RMS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에서 은행과 결제기관이 모두 영업을 위하여 개점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통합 데이터베이스	은행이 RMS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모든 매출채권거래내역, 지급인 정보 또는 기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집중된 데이터 베이스를 말합니다.
통합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은행이 이용자로부터 받은 매출채권 거래 내역과 지급인 정보를 은행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내에서 저장, 관리, 그리고 갱신하는 RMS서비스의 한 부분을 말합니다. 이용자는 그러한 통합된 거래내역을 조회하거나 검색하며, 또한 이용자와 합의한 보고서 형태로 보기위해 E-Channels을 통해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통합보고서 제공서비스	RMS서비스의 한 부분으로서 은행이 해당 거래에 대한 내역을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외처리 서비스	RMS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서, 미리 약정된 배분원칙(만약 있다면)을 우선 적용시킨 다음, 남은 입금액을, 자동예외처리서비스 또는 수동예외처리서비스에 따라 동일한 지급인의 미결제 인보이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처리하기 위하여 배분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급수단	RMS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시되는 해당국가별 유효한 지급수단으로서, 현금, 내국통화표시수표, 외국통화표시수표, 약속어음, 은행환어음, 은행수표 및 신용채권 등의 지급수단 및 이용자와 은행이 RMS서비스에 따라 약정한 지급수단 등을 말합니다.
지급가액	지급수단의 액면가액을 의미합니다.
인보이스	RMS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지급인 앞으로 발행한 인보이스를 의미합니다.
수동예외처리서비스	본 RMS 추가계약에서 명시한 RMS서비스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지급수단의 잔액을 동일한 지급인의 미결제 인보이스를 수동으로 정산하기위하여 배분하는 예외처리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자동예외처리서비스	배분원칙에 따라, 지급수단의 잔액을 동일한 지급인의 미결제 인보이스와 자동으로 정산하기위하여 배분하는 예외처리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지급인	해당 인보이스를 결제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인보이스 상에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지급인 파일	하나 이상의 지급인 정보를 포함한 파일을 의미합니다.
지급인 정보	은행이 RMS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지급인의 필요한 모든 세부사항을 기재한 기록을 의미합니다. 모든 지급인 정보는 수시로 이용자와 은행이 합의한 E-Channels, 또는 다른 수단, 매개물 또는 경로를 통해 지급인 파일을 은행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대사된 매출채권 파일	매출채권 대사서비스에 따라, 이용자를 위해 은행이 적절하게 대사한 매출채권 파일을 의미합니다.
RMS 서비스 별첨	RMS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국가의 특수한 이용요건을 기재한 본 RMS 추가계약서(수시로 변경됨)의 별첨으로서, 국가별 특수 조건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RMS 서비스	은행이 이용자에게 E-Channels을 통해 제공하는 RMS서비스의 일부를 구성하고 본 RMS 추가계약에 보다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RMS 추가계약	서면에 의하여 수시로 변경이 가능한 RMS 서비스의 이용을 규율하는 E-Channels 이용자계약을 말합니다. 또한, 이용자에 의하여 수시로 이용이 가능하거나 또는 E-Channels을 통해 공고되는 RMS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별첨이나 추가조항을 포함합니다.
거래	지급인이 이용자에 대한 지급행위(문서 및 전자 지급 포함)로 E-Channels에 의해서 세부사항이 인식된다.

## 2.RMS 서비스

2.1.은행이 제공하는 RMS 서비스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이용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2.1.1. 통합 데이터 베이스 서비스
- 2.1.2. 매출채권 대사 서비스
- 2.1.3. 통합보고서 제공 서비스

2.2.이용자가 RMS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약정하고, 은행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동의한 각 관련 국가에서, 은행은 본 RMS 추가계약 및 RMS 서비스 별첨을 포함하며, 제한없이, E-Channels 기본계약의 약관에 따라 RMS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2.3.은행은 해당 국가 내 RMS서비스의 내용의 일부를 은행의 사정에 따라서 확대, 축소, 변경, 정지,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실무상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에게 합당한 이유를 통지 할 것입니다.

## 3.이용자의 의무, 진술 및 보장

3.1.RMS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는 이용자의 지시사항 및 다른 지시사항(배분원칙포함)을 은행이 요구하는 다른 수단, 매개물, 또는 경로를 통해 은행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3.2.매출채권 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E-Channels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수단, 매개물 또는 경로 그리고 은행에서 지정하거나 인정할 만한 보안장치를 부가하여, 은행에 매출채권 파일과 지급인 파일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3.3.매출채권 파일 및 지급인 파일을 E-Channels 이외에 전자 메일, 컴퓨터 디스크, CD ROM 또는 기타 유사한 수단, 매개물 또는 경로를 통해 전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3.2항의 일반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파일은 은행에 전송 전에 반드시 암호화 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이용자는 모든 매출채권 파일과 지급인 파일에 대하여 은행이 실제로 수령하기 전까지 동 파일의 보안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3.4.기본계약에 규정된 비밀보장 및 수권에 관한 모든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3.4.1. 이용자는 RMS 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공되거나 또는 은행이 수취한 개인 정보 및 지급인정보를 포함한 기타 정보 (이용자 계열회사(Customer Associate) 및 지급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의 이전, 이용, 처리 및 저장에 필요한 모든 권한과 필요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장합니다.

3.4.2. 이용자는 RMS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거나, 또는 관련 법 규정 또는 관련 공공기관 또는 감독당국의 규제에 따라 요구되거나 허용된다고 은행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은행이 HSBC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 또는 제3자(은행의 대리인 및 서비스 공급업자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하여 이용자, 이용자 계열회사(Customer Associate) 및 지급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은행에 부여합니다. 또한 은행이 합리적으로 RMS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하거나 요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은행이 상기 정보를 관련국가에 이전, 이용, 처리 및 저장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은행에 부여합니다.

3.5.이용자는 RMS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이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이용자는, 은행이 RMS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법률 및 규정의 준수를 목적으로 은행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추가적인 정보 및 문서를 은행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서명한 후 제공하여야 합니다.

3.6.이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RMS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비록 의무는 없다 할 지라도 은행이 E-Channels 외의 다른 수단, 매개물 또는 경로를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RM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임시조치들을 강구할 것임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RMS 서비스에 적용되는 계약의 모든 규정들은, 은행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임시조치들을 통해 제공되는 RMS 서비스의 이용에 관해서도 적용 가능한 한도 내에서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3.7.“이용자지시”는, 기본계약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E-Channels을 통해 은행이 수령한 모든 매출채권 파일 및 지급인 파일을 포함합니다. 또한 RMS 서비스와 관련하여, E-Channels 외의 다른 수단, 매개물 또는 경로를 통해 은행이 수령한 것으로서, 4.4항에 언급된 거래 내역을 포함(이에 한정되지 아니함)하여 매출채권 파일과 지급인 파일 및 기타 지시 또는 의사소통내역은, 은행이 이를 수령한 시기 및 장소를 불문하고 또한 이를 이용자가 전송 또는 제공하였는지 아니면 4.4항에 언급된 수권 받은 자가 전송 또는 제공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언제나 “이용자 지시”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용자 지시”를 언급하거나 거기에 적용되는 기본계약의 모든 조항은 이에 따라 적절히 해석되어 질 것입니다.

#### 4.은행의 권리와 의무

##### 4.1.통합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4.1.1.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매출채권 거래 내역과 지급인 정보를 수령함과 동시에 이용자 지시에 따라 은행의 통합데이터베이스에 매출채권 거래내역과 지급인 정보를 저장, 유지 및 갱신합니다.

4.1.2. 은행은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의 매출채권 거래 내역을 갱신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로부터 관련된 상세정보를 가져옵니다.

4.1.3. 은행은 E-Channels을 통해 또는 E-Channels에 따라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고, 지급인 정보를 갱신하며, 저장된 정보로부터 생성된 보고서를 요청하는 등 은행이 수시로 지정하는 특정 기능들을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4.2.매출채권 대사 서비스

4.2.1. 은행은 이용자와 사전에 파일작성 원칙을 정하고, 이 원칙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매출채권 거래내역파일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합니다. 검증 후, 은행은 이용자 지시, 배분원칙 및 필요한 경우, 예외처리 서비스에 따라 해당 거래와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매출채권 거래 내역을 대사하여, 해당 이용자의 대사된 매출채권파일을 작성합니다.

4.2.2. 은행은 E-Channels을 통해 이용자에게 대사된 매출채권 파일을 제공합니다.

##### 4.3.통합보고서 제공 서비스

4.3.1. 은행은 이용자가 선택한 보고서 유형(들)에 따라 그 내용, 형식 및 빈도수에 맞추어 해당 거래내역을 제공합니다.

4.3.2. 은행은 4.3.1항에 언급한 보고서를 E-Channels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4.4. 은행은 은행의 재량으로 매출채권 내역, 지급인 내역, 거래관점에서의 기타 내역, 그리고 이용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수권을 받은 자가 제공하는 지급인 내역, 다른 은행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을 포함하는 거래내역을 RMS서비스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용자는 수권받은 자가 전송한 세부 거래내역을 은행이 동의한 양식 및 보안방식

에 따라, 은행이 동의한 다른 수단, 매개물 또는 경로를 통해 은행에 제공할 것을 동의하며 수권받은 자가 이에 따를 것을 보장합니다.

4.5.RMS 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 또는 그 대리인의 계좌 및 내역은 명백한 오류가 있지 아니하는 한, 은행 또는 그 대리인이 수령 또는 추심한 지급수단, 지급가액, 관련 또는 해당 청구서, 관련 지급인과 수령일 및 관련 거래의 효력발생일에 관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용자는 그러한 계좌 및 내역이 원본이 아니고, 또는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으며, 컴퓨터로 생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절차상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반대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합니다.

4.6.이용자가 신청한 국가 내에서의 RMS 서비스는 해당 국가 내의 은행에서 제공되며, 다른 곳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거래 은행은 언제나 해당 국가 은행의 대리인으로서 본 RMS 추가계약(RMS 서비스에 적용될 기본계약상의 모든 다른 조건들 포함함)을 이용자와 체결합니다. 이와 같이, 기본계약 및 본 RMS 추가계약이 해당 국가 내 이용자의 RMS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 기본계약 및 본 RMS 추가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언제나 그 국가 내의 은행과 이용자입니다. 이용자가 여러 국가에서 RMS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개별 국가 여건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의무 및 책임은 상이할 것 입니다.

## 5.면책 및 책임에 대한 제한

5.1.이용자에 대한 은행의 책임과 은행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무(기본계약서 제9조에 규정되어 있음)와 관련하여 기본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규정은, 본 RMS 추가계약서에서 그 전체를 명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RMS 추가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5.2.은행 또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 계좌로 지급되지 못하였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발생한 영업기회의 상실, 간접적이거나 결과적 손실(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 등에 대해서는 은행은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3.이용자가 본 RMS 추가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은행이 RMS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취한 이용자지시, 수권 대리인 지시, 배분원칙, 예외처리서비스에 따른 지시, 기타 지시 등에 따라 행동한 경우, 이용자는 은행과 HSBC 그룹 구성원이 본 RMS 추가계약으로부터 또는 관련하여 입은 일체의 조치, 청구, 법적 절차, 손실, 손해 및 비용 등에 대하여 은행과 HSBC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이에 대해 배상할 것을 동의합니다.

## 6.RMS 서비스 수권대리인

6.1.이용자는 RMS 서비스 별첨에서 지정한 자를 해당 국가 내 은행이 제공하는 RMS 서비스에 관한 자신의 수권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이러한 수권 대리인은 이용자를 대리하여, 은행이 수시로 제공하는 RMS 서비스에 관한 모든 행정적, 운영적 문제에 관하여, 은행에 지시("수권 대리인 지시")할 전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용자는 은행의 승인에 따라,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는 한 명 이상의 수권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6.2.수권 대리인의 변경은 이용자가 후임 수권 대리인을 지정하고, 변경의 효력발생일을 정하여 최소한 14일 이전에 은행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7.RMS 서비스의 해지

7.1.각 국가별 RMS 서비스는 해당 은행 또는 이용자에 의해 아래 조치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 될 수 있습니다:

7.1.1. 상대방에 대해 최소한 1개월 전에 서면통지를 한 경우, 또는

7.1.2. 상대방이(가) RMS 서비스와 관련하여 중대한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받고도 14일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나)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지급불능 상태가 되어 상대방에 서면 통지를 한 경우(이 경우에는 즉시 해지 됨).

7.2.특정 국가에서의 RMS 서비스 해지는 언제나 당해 국가에 관한 RMS 서비스의 제공만 중지시키며, 다른 국가에서 제공되는 RMS 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3.RMS 서비스 및/또는 RMS 서비스 별첨의 해지는, 그러한 해지 이전의 계약 및/또는 본 RMS 추가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발생한 권리, 책임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8.준거법

8.1.기본계약서상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RMS 추가계약과 기본계약서에 RMS 서비스에 적용되도록 규정된 다른 규정들은 특정 국가 내에서의 RMS 서비스 이용에 적용되고 규정하는 한, RMS 서비스가 제공되는 당해 국가의 관련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 각 당사자들은 해당 국가 법원의 비전속적 관할권에 합의합니다.

## < RMS 서비스 별첨 >

본 매출채권관리시스템(RMS) 서비스 별첨은 아래 당사자간 E-Channels 이용자계약의 일부인 “E-Channels 추가계약서 - 매출채권관리시스템(RMS)”에 대한 별첨으로 동 계약의 일부임

이용자명:  
주거래은행명:  
일자:

본 매출채권관리시스템(RMS) 별첨은 아래에 기술된 은행이 해당 사법관할지역에서 이용자에 제공하는 RMS 서비스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아래에 기술된 일자로부터 유효함

사법관할지역:  
유효일자:

상기 해당 사법관할지역에서 RMS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서울특별시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HSBC빌딩 14층)

### 서비스 형태 선택

아래에서 해당사항을 선택

- 기본형 : 통합데이터베이스 및 통합보고 서비스
- 확장형 : 통합데이터베이스, 매출채권 대사 서비스, 예외처리 자동서비스, 및 통합보고 서비스
- 고급형 : 통합데이터베이스, 매출채권 대사 서비스, 추가정보 제공, 예외처리 수동서비스, 및 통합보고 서비스

### 지급계좌

본 RMS 서비스와 관련한 서비스 수수료 등 요금은 월별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처리된 건수 등에 의거하여 월단위로 해당 수수료 등 요금을 합산하고, 해당월 합산 요금금액은 익월 15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이용자가 지정한 아래 계좌에서 별도의 예금인출 청구절차 없이 자동 인출된다.

이용자계좌 1:  
이용자계좌 2:

### 서비스 수수료 및 요금

#### A. 기본요금

최초 설치비:  
정보 관리비(월):

#### B. 서비스요금

매출채권 대사

1,000건 미만 (대사완료건 기준, 월 단위):  
1,000건 이상 5,000건 미만 (대사완료건 기준, 인보이스단위):  
5,000건 이상 10,000건 미만 (대사완료건 기준, 인보이스단위):  
10,000건 이상 (대사완료건 기준, 인보이스단위):

추가정보관리

지급수단 건당:  
인보이스 건당:  
(매출채권파일 제공없음)  
인보이스 건당:  
(매출채권파일 제공받음)

수동예외처리  
지급수단 건당:  
인보이스 건당:

**C. 통지 서비스**

계좌관련 정보 (통지형태 1&2) - 예금주에 통지	SMS	e-Mail	Fax
계좌관련 정보 (통지형태 1&2) - 예금주아닌 수신인에 통지	SMS	e-Mail	Fax

**D. 기타**

--	--

**RMS 서비스 계약체결에 대한 이용자 대리인**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주소 :  
주소 :

서명날인 :

(붙임 3)

## 매출채권관리시스템(RMS) 서비스 별첨 - 국가별 부속 조건 (대한민국)

본 매출채권관리시스템(Receivables Management System, 이하 “RMS”) 국가별 부속조건(이하 “본 부속조건”)은 대한민국에서 매출채권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기본계약인 E-Channels 이용자계약 -매출채권관리시스템(이하 “RMS 추가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 부속조건과 RMS 추가계약 또는 E-Channels 이용자계약간에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본 부속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본 부속조건이 은행에 RMS 추가계약 또는 E-Channels 이용자계약에 따라 은행에 부여되는 권리와 유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본 부속조건에 포함되는 그런 추가적인 권리들은 RMS 추가계약 또는 E-Channels 이용자계약서의 관련 조항들을 보충하는 것이며,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RMS 추가계약서 또는 E-Channels 이용자계약에서 정의된 용어는 본 부속조건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 1. RMS 서비스와 가상계좌 서비스의 연계

은행은 이용자와 별도로 약정한 ‘가상계좌 자금관리서비스 이용약관(“가상계좌약관”)’에 의거하여, 이용자에게 부여된 일련의 고유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모계좌에 입금해 주는 가상계좌를 통하여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가상계좌 서비스는 RMS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가상계좌약관에 따라 부여된 가상계좌번호를 RMS 서비스를 받기 위한 지급인 아이디(Payor ID)로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은행이 부여한 일련의 가상계좌에 특정 지급인 정보를 할당한 후, 동 정보를 E-Channels 또는 은행과 이용자가 합의한 이와 유사한 다른 방법, 매개물 또는 경로를 통하여 지급인 파일(Payor File)형태로 제공한다.

### 2. 이용자에 대한 은행의 책임

본 RMS추가계약 제5조는 은행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를 적용하기로 변경한다.